

임원 규정

제정 18.11.28

개정 20.06.08

제1조(근거)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산악연맹(이하 “연맹”이라 한다) 규약 제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임원 구성 및 관리에 관해 규정한다.

제2조(적용)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산악연맹 임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의무와 직무) ① 임원은 연맹 규약 제17조 1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을 한다.
② 임원은 연맹 규약 제17조 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·의결을 할 수 있으며, 연맹 규약 제28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구성) ①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구성한다.

1. 회장 1명
 2. 부회장 7명 이내
 3.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내(회장, 부회장 포함)
 4. 감사 2인(회계감사, 행정감사)
- ② 연맹 규약 제22조 2항에 따라 임원의 수를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 할 수 있으나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이사로 한정)
- ③ 제1항 4호의 감사 중 회계감사는 규약 제26조 4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.

제5조(임원의 임기) ① 연맹 규약 제29조에 따른다.

제6조(임원기부금)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임원기부금을 매년 납부를 하여야 한다.

1. 회장 : 일천만원
 2. 부회장 : 이백만원
 3. 이사 : 삼십만원
- ② 임원 기부금은 납부는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7조(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)

- ① 결격사유는 연맹 규약 제30조에 따라야 한다.
- ② 해임은 연맹 규약 제14조 및 규약 제31조에 따라야 하며 단, 본 규정 제6조에 따라 임원기부금을 납부 하지 아니할 경우 차기년도부터 임원직은 해임된다.
- ③ 제1항에서 2항에서 정한 결격사유 이외의 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.
 1. 연맹의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
 2. 임원간의 화합을 방해하는 경우
- ④ 제3항의 사유로 인한 해임일 경우 스포츠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, 이사회에 보고 하여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결한 후 차기 총회에서 의결하여야한다. (개정 20.06.08)

⑤ 제7조 1항에서 3항까지의 임원의 해임 및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, 회장은 결원된 이사를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의결하여야 한다. (개정 20.06.08)

제8조(규정 해석)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, 수정이 있을 때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연맹 규약을 우선시 한다.

부 칙 (2018. 11 . 28 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0. 06 . 08 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